

#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은 '증거 우위의 원칙' 을 토대로

글 | 이근영 \_ 한겨레신문 기자 kylee@hani.co.kr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논문조작 사건과 관련해 7명의 교수에게 내린 징계에 대해 논란이 많다. '숨방망이보다 약한 면봉 수준'이라는 징계의 수위에 대한 비난에서부터 의대 교수에게 '징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형평성 문제 제기에 이르기까지 비판의 스펙트럼도 넓다. 한국과학기술인 연합은 "관련 연구활동과 조작행위에 구체적으로 참여한 것이 명백히 밝혀진 이들이 심지어 논문조작을 은폐하기 위한 각종 언론플레이에 적극 나선 것을 고려하자면, 소장 학자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관대함을 베푼 서울대 징계위측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성토하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대 징계위의 징계 수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77%가 '부적절하다'고 답하고, 그 이유로 '부정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 (57%)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 (27%)을 꼽았다.

## 황 박사 논문조작사건 관련자 징계수위 논란

그러나 돌아보면, 서울대 징계위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발 빠른 징계는 그나마 다행인지도 모른다. 브릭 회원들도 징계위의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의적절했다(28%)거나 서울대 자체적으로 진행된 사안이어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43%)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대측은 징계 수위의 미흡함에 대해 "서울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이고, 공무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파면과 해임 다음으로는 징직이 가장 중한 벌"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미국 피츠버그대도 제럴드 새튼 교수에 대한 조사보고서에서 대학 내규에 규정된 '과학적 부정 행위'로는 조작, 변조, 표절뿐이어서 새튼의 행동을 '연구 비위행위'라고만 규정하고 넘어갔다.

서울대 징계위나 피츠버그대 조사위원회 모두 이미 빚어진 부정

행위에 대해 적용할 규정을 갖추지 못해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셈이다. 일종의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연구 부정행위에도 '애매모호하므로 무효(Void for Vagueness)' 원칙과 '지나치게 광범위해 무효(The Overbreadth Doctrine)' 원칙이 작동한다. 과학적 부정행위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근거로 비난을 하거나 징계를 내릴 경우 명예훼손이나 행정 소송으로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로서 아쉬운 것은 피츠버그대 조사위가 "대학 관리 규정이 교정 조치든 징계 조치든 이런 연구 비위를 발견하는 데 균형이 잡혀야 한다"며 "과학저작물의 상위저자나 교신저자가 갖는 책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포함하도록 윤리규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데 비해 서울대 조사위는 황우석팀의 조작행위에 대해서만 밝혀냈을 뿐 징계위에 회부하라는 등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과학기술부가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연 데 이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생물학연구정보센터 사이트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것은 기대되는 일이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서 부정행위의 유형을 위조·변조·표절에서 나아가 '부당한 공로배분'과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로까지 불명확하고 방만하게 정의해 놓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애매성 무효와 광범성 무효 원칙에 위배된다. 이를 잘못 운용할 경우 자칫 법은 만들어 놓고 '인치(人治)'에 빠지는 오류가 발생한다.

무엇보다 앞서서 우리는 가이드라인이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연구기관과 조사위원회에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 조항은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



황우석 교수의 최고과학자 자격이 공식 박탈된 가운데 교육부가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작한 연구윤리소개 책자. 이 책은 각 대학 연구소와 연구를 수행중인 교수 1만4천여 명에 배포됐다.

으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고 단서를 달아두고 있기는 하다. 이 조항은 말하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검찰이 과학을 수사하는 오류 반복하지 말아야**

황우석 팀의 경우를 보자. 서울대 조사위는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배아줄기세포주 수립 여부에 대해서는 속시원한 조사를 못해냈다. 부실한 자료와 솔직하지 못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벽이었다. 이런 상황에 더해 서울대 조사위는 스스로 밝혀낸 부분에 대해서조차 서울대 징계위의 처분 여부를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다. 결국 진실 규명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김선중 연구원은 2·3번 줄기세포의 조작이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이런 정황은 검찰로 하여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황 교수에게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아넣었다. 서울대의 징계 조치가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검찰 수사결과에 앞서 이뤄진 것은 이런 점에서 다행스럽다는 것이다.

과학적 연구와 관련한 부정행위에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 과학적 행위는 ‘의도·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험과 관찰로 이뤄진다. 근대과학은 감각에만 얽매이지 말고 이성을 사용하되, 감각의 불완전성을 보충하기 위해 기구를 사용하고(중족의 우상 타파), 개인의 주관이나 선입견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여러 사람의 협동과 상호비판을 제의하며(동굴의 우상 타파),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물체와 현상에 의지하기 위해 실험을 하고(시장의 우상 타파), 어떤 체계나 학파에 얽매이지 않는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라(극장의 우상 타파)는 베이컨의 제언을

토대로 형성됐다.

따라서 과학적 결과에 오류가 있는지는 ‘의도가 없었다’로 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자료와 기록으로 증명돼야 한다. 여기에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은 ‘증거 우위의 법칙’에 토대를 뒀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HHS)의 연구윤리 규정은 이를 분명히 규정해놓고 있다. 입증의 책임은 ‘증거 우위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자에게 지워진다. 우리의 연구윤리 가이드라인도 이런 구조를 취해야 외부 기관(검찰)이 과학적 사실을 ‘수사’하는 비상식적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황우석 팀에게 ‘재연’의 기회를 주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에게 ‘배아줄기세포 제조기술’을 입증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과정과 절차의 적합성에 대해 증명하라는 의미에서다. 일본이 연구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다이아 가즈나리 도쿄대 교수에게 재연의 기회를 주고, 결국 ‘조작’ 결론을 내린 사례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피조사자의 입증 책임 제도는 무고 남발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과학계가 스스로 정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우려할 일은 아니다. 연구원에 의해 고발된 미국 터프츠대학의 테레자 이마니시-카리 교수가 미 보건복지부 연구윤리국 탄원위원회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뒤 그 연구원은 과학계에서 영원히 추방됐다. ㉓



글쓴이는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뒤 한겨레신문사에서 과학담당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협동과정(석사)을 수료했다.